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68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윤준병·주철현·송옥주

이원택 • 조계원 • 박민규

허 영·정동영·신영대

민병덕 · 김태선 · 김윤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임.

2023년 1월 최초로 도입된 이 특별회계는, 교육 분야 간의 투자 불 균형과 초·중등교육에 치우친 재정 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 예산을 전입받는 한편 추가 세입을 도입하여 총규모가 10조원에 달하 며, 현재까지 대학 등에 지원해 왔으나, 2023년 1월 1일 최초 시행된 이후 2025년 12월 31일부로 그 효력이 종료될 예정임.

이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고등 ·평생교육의 역량 강화를 계속하여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02 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02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중 "2025 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u>2025년</u>	제2조(유효기간) <u>2030년</u> -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